

「서울광역청년센터」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6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원화된 광역 청년센터 공간과 기능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
- 나.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2, 「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」 제20조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
- 다. 청년활력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(단체)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서울광역청년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15, 2층(2,281.25㎡)
- 공간구성 : 커뮤니티공간, 사무실, 상담실, 회의실 등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)
- 위탁업무 : 서울광역청년센터 관리 운영 일체
 -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·평가
 -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
 - 청년수당, 마음건강 사업 등 서울시 핵심 청년정책 추진 지원

-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
-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
- 정책 수립·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·정보 집적과 공유
- 시설·물품 등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등
- 소요예산 : 3,766,148천원 ('24년 예산편성한 기준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 (신규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0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민간의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과 노하우,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
- 청년시설 관리·운영에 대해 민간의 경험에 기반하여 민간자원과의 적극적 연계 협력을 추진,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기관(단체)에 위탁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2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-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0조(청년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)
- 「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 등)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예산편성 추진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3.7.) : 적정

※ 작성자 :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박세희 (☎2133-4304)